

회계감사업무의 차별화에 관한 實證的 考察

—Product Differentiation of Audit Services: An Empirical Test—

金光潤**

<目 次>	
I. 序 論	
1. 연구의 필요성	가.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
2. 연구 목적	나. 설문응답자의 표본분포
3. 연구 내용 및 방법	다.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II. 制度 및 文獻研究	라. 분포의 정규성 검토
1. 회계감사업무의 수요와 공급	마. 연구가설에 대한 검정
2. 제도의 개관	(1) 회계사업부별 책임차이에 대한 가설의 test
3. 기존연구의 검토	(2) 이해관계자집단간의 인식차이에 대한 가설의 test
III. 實證研究	(3) 조사대상집단내 특성간의 인식차이에 대한 가설의 test
1. 연구의 설계	
가. 가설의 설정과 변수의 정의	
나. 표본선정과 자료수집 방법	
다. 분석방법	
2. 통계적 분석과 해석	
	IV. 結 論
	1. 연구의 요약과 提言
	2. 본 연구의 한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미국 공인회계사회는 1987년 5월 同會의 일백주년 기념으로 기관지인 "Journal of Accountancy"에서 "공인회계사 업무의 범위—100년의 발자취에서 본 미래조망"이란 특집 기사를 실고 [Mednick and Previts, 1987] 초창기인 1880년대에는 회계사의 업무가 부도나 파산정리업무, 회계업무, 감사업무 등의 순으로 주종을 차지했으나 1900년대로 넘어오면서 감사업무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1930년대에는 세무업무가 변호사독점에서 동참케 되어 확장되었고 또 1950년대 후반부터는 경영자문업무(Management Advisory Services, 이하 MAS)가 새로운 회계사의

* 본 研究는 文敎部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서 이루어졌음. —연구수행 중 자료제공에 도움을 준 공인회계사 김경진, 윤종규, 두분과 특히 익명의 논문심사자에게 謝意를 표한다.

** 亞洲大 經營大學 助敎授

† 學會原稿接受日 1月 22日

업무영역으로 등장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다.

그후 1960~1970 년대에 와서 실무계로부터 會計監査—稅務—經營諮問(attest-tax-consulting)의 세 가지 업무를 한 회계사 사무소에 일괄 위임하는 소위 “一括쇼핑(one-stop-shopping)” 요청으로 경영자문업무의 비중이 감사업무를 능가할 정도가 되었으며¹⁾ 이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independence) 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그 결과 회계사업계에 대한 의회의 조사가 있었고[U.S. Senate, 1977], 회계사업계자체에서도 실태조사 및 새로운 진로 모색 등으로 腐心하였다[Commission on Auditor's Responsibilities 이하 CAR, 1978].

원위있는 정의에 의하면 회계감사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과 사건에 관한 경영자의 주장(management assertions)과 제정된 기준(established criteria)과의 부합정도를 판정할 목적으로 주장에 관한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집,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반이해관계 있는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체계적 과정이다.[AAA's ASOBAC, 1972]

이와같은 회계감사가 사회적제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은 증권자본주의하에서 기업정보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소유자와 경영자, 소유자와 채권자등의 공평한 이해조정자로서 또 복잡한 회계업무의 전문가로서 제한된 경제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독립된 외부감사인을 필요로 하게 된 데 기인하고 있다.

오늘날 경쟁의 물결은 회계감사분야에도 밀어닥쳤다. 즉, 회계감사가 종래 법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는 수동적 관점으로부터 공인회계사의 제품으로서 독립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기업의 상충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자발적 제도로 인식되는 능동적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쟁적 시장하의 自由受任的 회계감사제도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단계에 이르렀으나 한국의 경우는 1982년부터 제한적 자유수임제도로 시작되어²⁾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한 채 과도기적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 회계사업계에서는 감사계약체결시 과당경쟁으로 감사보수덤핑, 적정의견, 事前保障으로 독립성상실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으며³⁾ 다른 한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지못해 외부감사를 받게 된 중소기업 등은 감사로 인해 받는 사회적 효익(audit benefit)보다 감사받는 시간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보수가 高價인 점 등 감사비용(audit cost)이 더 크다는 점을 들어 감사대상제의 내지는 감사보수할인을 소리높여 주장하고 있어 [외부감사의 확대는 중지될 수 밖에 없는가?] [마찰없는 외부감사제도의 도입방안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의식에서 우리 사회에 적합한 감사업무의 체계화 내지 차별화가 필요한 시기에 이르렀다.⁴⁾

1) 1983. 10 미국의 “Consultant News”誌에서 선정한 10대 경영자문회사 중에는 Big Eight CPA Firms 중 네 군데가 포함되고 있음.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인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재무부告示) 및 감사인의 조직 및 운영규정(한국공인회계사회 내규 제38호) 참조

3)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논문으로는 [Shockley, 1981], [Simunic, 1984], [Pany and Reckers, 1984] [南相午金星基, 1987] 등이 있다.

4) 감사대상회사의 수는 1963년의 15개사에서 시작하여 1977년에는 3,265개사로 대폭 늘어났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간접대응책으로 1986.7. 주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감사보수를 인하 조정하였다.

2. 研究 目的

기업경영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련을 맺고 있다. 경영자, 투자자, 채권자, 정부당국 등이 그들인데 이들은 서로 이해가 상충(conflict of interests)될 뿐 아니라 경영자를 제외한 여타 관계자들은 기업정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remoteness) 따라서 정보의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이 작성한 복잡성(complexity)을 띤 회계정보의 신뢰성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독립된 감사전문가(independent audit expert)로서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가 등장하게 되었다.

감사업무(audit service)를 經濟學的 均衡이론에서 살펴보면 먼저 需要측면에서 정보이용자가 회계정보의 질(quality of information)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감사인과 이용자 사이의 필수적인 의사소통과정(communication process)이라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供給측면에서 볼 때 회계감사의 최종생산함수가 의견상 관찰불가능하고 단순덧셈이 적용되지 못하며 公共財(a public good)적 특성을 가지므로⁵⁾ 그대로 수요공급시장에 맡길 경우 균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market failure) 법령에 의한 규제로 수요를 조장시킬 필요(mandatory audit requirement)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 代理人理論(agency theory)의 관점에서 보면 감사를 통하여 회계정보의 질을 판단하는 本人(principal, 정보이용자)이 얻는 효익이 代理人(agent, 감사인) 활용에 따른 비용보다 보다 커야 한다는 原價效益公理(cost-benefit theorem)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바, 이는 감사업무의 확산을 위하여 감사인의 업무관련수준(level of auditor association)을 기준으로 하여 감사업무를 미국처럼 정규감사(full audit), 검토(review), 재무제표작성(compilation), 장부기장(accounting) 서비스 등으로 수직적 업무차별화(vertical product differentiation)함으로써 정규감사의 일괄적용에 반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은 업무 및 상응한 低보수로 대상업체를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 현행보다 나은 회계정보를 산출케 하는 效益을 가져온다. 다만 이것은 공인회계사간의 업무처리 수준상 차이인 수평적 업무차별화(horizontal product differentiation)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한편 감사인의 관련정도의 차에 따른 책임차이 인식도면에서 감사인(auditor)과 감사보고서 이용자(user) 사이에 인식의 불일치(discrepancy of recognition)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각종 차별적 업무에 대한 보고서 이용자의 이해부족에 기인하거나 아니면 각종 업무의 보고문안에 모호한 점이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CAR, 1978] 결국 공인회계사가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주저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81년부터 시행된 주식회사의 외부감

5) D.S. Ng(1979)은 감사서비스생산함수가 보통의 소비재와 다른 특성으로 unobservability, non-additivity 및 non-privacy를 들고 있다.

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독립된 외부감사가 보다 확대적용되고 있으나 한국적 소유 경영형태의 특징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보수의 과다부담 등으로 감사대상업체(auditing entity)의 축소여부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며 뿐만 아니라 정규감사 이외의 약식감사, 기업진단, 기장업무 등에 대한 구별이 명확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첫째, 관련 이해관계집단간(감사인, 이용자, 피감사회사)에 감사업무차별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달리 보고 있는가

둘째, 업무차별화의 방안으로 어떠한 階層化(정규감사, 약식감사, 기업진단 등)가 좋을 것인가

셋째, 현실상 업무차별화의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회계사 업무범위를 규정한 현행법령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등을 현장 조사로써 究明하여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감사업무의 수직적 차별화를 이론적으로 시도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3. 研究內容 및 方法

가.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독립된 공인회계사의 서명을 반드시 요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한국적 현실에서의 업무빈도를 고려하여 그 유형을 (1) 정규감사, (2) 약식감사, (3) 기업진단, (4) 재산확인, (5) 기장 대리 등으로 5구분(논자 임의 구분임—pilot survey 실시)하여 수직적 업무차별화(vertical product differentiation)에 대한 인식도를 아래 대표가설을 설정한 뒤 조사, 분석하며(단, 공인회계사간의 水平的 業務差別은 없다고 가정함)

(대표假說) H_0 : 감사인의 관련정도에 따른 업무별로 감사인의 책임이 같다.

H_a : 감사인의 관련정도에 따른 업무별로 감사인의 책임이 다르다.

- 2) 한국 사회에서 공인회계사가 취급할 가치가 있는 추가 업무의 개발 필요성을 조사하고
- 3) 회계시스템상 미숙한 중소기업 등에게 적절한 수준의 과도기적 업무차별화(예컨대 일정기간 약식감사후 정규감사로 이행)의 가능성을 조사하며
- 4) 이상에 따른 제업무의 차별화가 가능한 경우 보고서 문안상 법적책임을 구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용어의 정의

- (1) 정규감사—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의견 표명(공기업 및 비영리법인감사 포함)
- (2) 약식감사—제한된 범위의 감사를 뜻하며 현재 상장법인의 감사 중 일부로서 행하는 반기 검토(semi-annual review)에 상응시킬 수 있음.
- (3) 기업진단—건설업, 전기공사업, 의약품도매업 등의 인허가 취득 및 갱신때 관련부처와

법규에 의한 약식 경영진단임

- (4) 계산확인—은행의 송금인증용 각종 계산확인
- (5) 기장대리—의견이나 확인을 표명하지 않는 단순한 장부기록 및 재무제표작성 등 회계서비스를 뜻함.

나. 연구의 방법

- 1) 공인회계사 업무의 수직적 업무차별화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사인을 대상으로 하여 pilot survey(부록참조) 함으로써 한국 현실의 CPA 업무를 적절히 유형 구분한 후,
 - 2) 조사대상(subjects)을 보고서 이용자(은행, 투자신탁, 증권회사, 정부기관), 감사인(supplier of audit service)과 피감사회사(demander of audit service)의 3개 집단으로 하며,
 - 3) 대상별 說問紙(questionnaire)를 작성(부록 참조)후, 標本調査(sampling survey) 또는 전수조사에 의거 우송으로 배포 및 회수하고,
 - 4) 위 연구목적에 기하여 유도된 諸 다른 가설
- 위 3개 조사집단을 대상으로 연구설계하여 통계적기법을 사용, 實證分析하고자 한다.

II. 制度 및 문헌 연구

1. 회계감사업무의 수요와 공급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경제체는 그것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되는 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며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때 시장의 형태가 경쟁이나, 독과점이나 또는 독점적 경쟁이나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원리는 그 존재형태가 재화 아닌 용역(service)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회계감사는 앞서 인용한 ASOBAC의 정의에서도 보았듯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아래 복잡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산출하는 회계정보에 신뢰성의 유무를 판단하며 더 나아가 능동적 의미에서는 기업 경영자로 하여금 보다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작성 공표케 함으로써 기업외부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올바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차원에서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케 하는 용역이다.

먼저 수요측면에서 볼 때 회계감사는 주주, 경영자 등이 양질의 회계정보를 얻고자 하는 요구에 부응하여 대상인 회계정보의 질(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⁶⁾을 향상시킴으로써

6) 회계정보의 질로서 David. Ng(1919)은 noise(비고의적 오류의 가능성), bias(고의적 오류의 가능성) 및 fineness(보고방법의 精巧性)의 셋을 들고 있으며 FASB의 SFAC No. 2(1980)에서는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한 속성으로 relevance, reliability(neutrality 포함), comparability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회계기준(1985)상 일반적으로 신뢰성, 충분성, 중요성, 안정성, 명료성, 계속성 등 6종을 열거하고 있다.

기업의 경제적 실상을 잘 관찰할 수 있게 한다.

즉 회계감사는 회계보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noise, bias, fineness에 영향을 미쳐서 이들을 예방하고 수정하게 하며 그 결과 기업을 둘러싼 주주, 채권자, 경영자 등 제반이해관계자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심할수록 감사의 효익은 더 커지며 감사될 재무제표와 감사미필 재무제표 사이에는 질적 차별화(quality differentiation)가 이뤄지게 되어 감사받은 회사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며 제품생산이 원활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며 결국 자발적 감사의 수요가 증대하게 된다.

한편 공급측면에서 보면 회계감사업무는 일반소비재와 다른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D. Ng. 1979, pp. 107-110]

1) 觀察不可能性(unobservability)—감사생산함수의 산출물인 오류탐지가능성(probability of detection)은 현재와 미래의 주주들에게 관찰이 불가능하다.

2) 非加算性(non-additivity)—감사서비스는 서로 다른 감사계약에 대하여 상호 不加算的이므로 개별공급량의 합이 총공급량을 이루지 못한다.

3) 非個人性(non-privacy)—감사서비스는 私有財가 아니라 오히려 公共財(public good)에 가까운 것으로서 감사의 효익을 타인이 공유하는 것을 排除시킬 수 없는 바 소위 free-rider problem(無賃乘車현상)을 야기한다.

이와 같은 특징의 회계감사업무는 전문가자격이 갖추어진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다. 국가별로 수요보다 많은 감사서비스공급이 있기도 하고 그 반대로 공급부족인 경우도 있으나 보편적으로는 외부감사업무가 내부감사가 채용되지 않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감사가 채용되고 있더라도 회사 내외부적 사정으로 그것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자의 간섭을 받기 싫다는 점, 경쟁사에 정보누출염려가 있다는 점, 감사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시되어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업무가 본래 주식회사제도의 생성이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진전되면서 이해조정적 차원에서 필요해진 사회적 유익 제도(social benefit)인 가담에 만약 분산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집단적으로 회계감사를 수행한다고 할 때 이들의 의견수렴비용(coalition cost)이 전문감사인에 의한 감사비용보다 더 들어(위 free-rider problem과 함께) 원가, 효익비교思考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율적 시장균형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소위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등장하는 바 이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있다.(박승현, 신준용, 1987)

1) 직접적 방안—market simulation

이는 정부주도적 방안으로서 정부가 회계감사의 대상기업을 일정기준에 의거하여 강제감사받도록 법령으로 제도화하는 것으로서 현실에 따른 타협과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2) 간접적 방안—market stimulation

이것은 정부가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 실패 요인들을 제거시켜 자율적으로 시장경제원리를 회복시키는 시장활성화방안이다.

위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강제하고 있어 전자에 가깝다고 보겠다.

2. 제도의 개관

가. 한 국

(1) 개 요

우리 나라의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공인회계사법(제 1 조)에 의하면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회계와 세무대리”의 8종을 직무로 한다고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공인회계사보수규정(제 3 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1) 회계감사(법원위촉조사포함), (2) 회계에 관한 감정, 증명, (3) 회계에 관한 입안, 법인설립회계, (4) 회계에 관한 계산, 정리(원가계산, 재무분석, 기장대리), (5) 세무대리로 5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초점인 감사 및 회계업무에 관하여 제도로서 규정된 내용을 체계화해 보면

구 분	대 상 업 무	관련기준(제정기관)
정규감사업무	1.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감법감사, 법원위촉감정등) 2. 비영리법인 감사 3. APT 감사 4. 공기업 감사	회계감사기준과 회계감사실시 준칙, 회계감사 보고준칙(모두 한공회) — 공동주택관리회계감사요령(한공회) —
약식감사업무	1.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2. 회계에 관한 감정, 증명 1) 기업진단 (1) 건설업 (2) 연쇄화사업 (3) 의약품도매업 (4) 전기공사업 2) 로얄티, 배당송금 등 증명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한공회) — 건설업체 기업진단규칙(건설부) 연쇄화사업자 실질자본진단요령(상공부)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요령(보사부) 전기공사업체 자본금진단요령(동력자원부)
회 계 업 무	1. 회계에 관한 계산, 정리 2. 세무대리	—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국세청)

이상의 업무 중 본 연구의 초점인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와 개념정립이 빈약한 기업 진단에 대하여서만 아래에 상술하기로 한다.

(2)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가) 의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이하 반기검토)는 증권거래법(제93조)에 의거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상장법인의 반기보고서에 포함되는 반기재무제표(현재는 반기대차대조표와 반기손익계산서에 국한됨)를 대상으로 하여 동반기재무제표가 반기재무제표작성지침(증권관리위원회제정,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준칙 2-130)에 위배되어 작성된 중요사항이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⁷⁾

그러나 이 반기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회계감사와 달리 내부통제제도, 거래기록 및 계정잔액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으며, 따라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특징을 가진다.

나) 실시절차

a. 반기검토계획서의 작성

b. 회계감사기준 제10조 제 3항에서 규정된 예비조사

c. 반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제도의 이해목적용 질문

d. 반기재무제표를 예산 및 전기와 전년도 실적과 비교 분석

e. 반기재무제표가 동 작성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음미

f. 담당임원에 대하여 반기재무제표가 동 작성지침에 따랐는지 여부와 전술절차 중 의문사항과 반기종료 후 발생한 중요사항 등에 대한 질문

g. 반기재무확인서의 징구 등

다) 보고서

감사인인 위 반기검토절차완료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반기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a. 반기검토준칙에 의하여 검토했다는 사실

b. 검토한 반기재무제표의 범위

c.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지 않았으므로 의견거절한다는 사실

d. 반기검토실시 중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negative assurance)

e.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다면 추가적 사항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진술

그리고 반기검토를 실시함에 있어 검토범위의 제한이 있거나 예외사항이 발견되고 회사가 그 수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실과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또 반기재무제표가 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에 첨부되어 표시되거나 감사인의 이름이 동 반기재무제표에 관련되어 표시될 때는 반기재무제표의 각면에 “감사하지 아니한 재무제표”라고 표기해야 한다. 아래에 우리나라의 반기검토보고서의 견본을 제시한다.

7) 반기검토는 1981년까지는 「한정확인」이라고 불리워졌다.

반기검토보고서

XX주식회사

이사회와 주주 귀중

우리는 증권거래법 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XX주식회사의 19년 월 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6개월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를 반기재무제표의 검토준칙에 따라서 검토하였습니다.

우리의 반기검토실시 중 상기반기재무제표가 반기재무제표작성지침에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계감사실시기준에 의하여 감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반기검토실시중 발견되지 아니한 중요한 예외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견을 표명할 수 없습니다.

참고목적으로 비교표시된 19년 월 일로 종료되는 6개월 회계기간의 반기재무제표는 당회계법인(XX회계법인)이 검토하였으며 19년 월 일자로 반기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 반기재무제표가 검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고목적으로 …반기재무제표는 검토되지 아니한 것입니다.”로 한다.)

19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

○○회계법인 (합동회계사무소)

대표사원(대표) 공인회계사

심리사원(책임) 공인회계사

담당사원(담당) 공인회계사

요컨대 우리나라의 반기검토제도는 상장법인에 한하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알아보는 미국의 검토업무 중 중간재무정보에 대한 review services와 거의 같으며 그외의 독립된 [비상장 기업의 재무제표]와 [재무예측자료]에 대한 검토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3) 기업진단

(가) 의 의

기업진단이란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여러가지 조사방법에 의거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受診기업체를 엄밀히 조사, 분석하여 경영상의 결함의 원인을 적출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책을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적 행위를 말한다.⁸⁾

이와 같은 기업진단은 일명 경영평가라고 불리기도 하며 원래 그 대상은 광범하여 판매, 구

8) 姜永福의 재무분석과 사업성 검토(경문사, 1984)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경영진단기준표(1986)를 참조하여 필자가 수정 보완함.

매, 생산, 노무 그리고 재무의 모든 관리부문을 포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상 재무 내지 회계부문에 국한하기로 한다.

(나) 종 류

1) 건설업 기업진단

이는 건설업법시행령에 의하여 건설부령으로 제정공표된 '건설업체기업진단규칙'에 따라 실시되는 회계부문에 대한 진단으로서 건설업자본 및 공사실적금액에 의하여 수진기업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2) 연쇄화사업 기업진단

이는 상공부고시로 제정공표된 소매상의 연쇄화사업운영요령에 의거 공고된 '연쇄화사업자실질자본 진단요령'에 따라 실시되는 진단으로서 유통업의 실질자본을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평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의약품 도매업 기업진단

이는 약사법시행규칙에 의하여 보건사회부고시로 제정공표된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요령'에 따라 실시되는 진단으로서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 수출입 및 판매의 업에 대한 회계상 실질자본액을 평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이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의하여 동력자원부고시로 제정공표된 '전기공사업체 자본금진단요령'에 따라 실시되는 진단으로서 전기공사업체의 면허기준중 실질자본금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5) 기타의 경영진단

이상 1)~4)의 기업진단이 법령에 근거를 둔 강제진단인데 비하여, 기업의 경영층이 합리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를 느끼고 공인회계사 등과 자유계약하는 일체의 경영진단을 총칭한다.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KICPA는 산하에 경영평가위원회를 두고 각종 요령 및 점검표를 제정 공표하고 있다.

나. 미 국

(1) 개 요

독립된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감사 및 회계서비스, 세무서비스, 경영자문서비스의 셋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중 감사 및 회계서비스는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다음 표에서와 같이 미국의 감사 및 회계서비스 중 본 연구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Review Services에 대하여 항을 바꾸어 좀더 구체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⁹⁾

9) SSARS에서는 이외에도 Compilation Services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Accounting Services의 하나로서 非公開企業의 주어진 자료에 입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업무로서 일체의 점검절차가 행해지지 않으므로 감사의견은 물론 일체의 확인도 부여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보고서문안에 표시되는 특징을 가진다.

구 분	대 상 업 무	관련기준(제정기관)
Auditing Services	1. Reports F/S-GAAP 2. Special Report (1) non-GAAP 기준감사(철도, 보험 등) (2) 특정항목감사(로얄티, 회사매수 등) (3) Compliance report(사채계약 등) 3. Reports on Personal F/S 4. Reports on Internal Control	SAS(AICPA-ASB)
Review Services	1. 공개기업의 중간재무정보 2. 비공개기업의 재무제표 3. 재무예측	SAS SSARS(Accounting & Review Services Committee) Forecast Guide(Financial Forecasts & Projections Task Force)
Accounting Services	1. 공개기업의 감사미필 F/S 2. 비공개기업의 재무제표작성(Compilation)	SAS SSARS

[Kell, Boynton, and Ziegler, 1986, Ch. 17-18을 적의수정]

(2) Review Services

가) 의 의

review services는 피감사회사와 정부당국 그리고 투자대중의 요구에 부응하여 회계사업계가 개발한 새로운 서비스로서(SAS No.24 전에는 limited review라고 했었음) GAAS에 의한 정 규감사(full audit)가 아니고 재무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한정적 확신을 주는 업무로서, 그 수행 절차가 질문과 분석적 검토에 한하며 또 의견을 표명치 않는 점 등 정 규감사와 다른 두가지 특 징을 가진다.

나) 공개기업의 중간재무정보에 대한 review¹⁰⁾

1) 중간재무정보란?

중간재무정보(interim financial information, IFI)란 한 회계기간내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최근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작성되며 또 완전한 재무제표일 수도 있고 요약재무자료일 수도 있다[APB Opinion No.28, 1973].

2) IFI review의 절차

- a. 대상기업의 회계제도와 내부회계통제제도의 중요변동사항에 대한 질문
- b. 이상항목을 발견하기 위한 분석적 검토
- c. 주주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 등의 의사록 열람
- d. GAAP 준수여부 검토를 위한 IFI의 숙독
- e. 기업의 일부를 타회계사가 검토한 경우 동회계사의 보고서 입수
- f. GAAP 준수여부, 영업활동 및 회계실무의 변동유무, 위 절차에서 발견된 문제사항 및 중

10) 공개기업(public entity)이라 함은 주로 당해기업의 유가증권이 증권시장이나 정외(OTC)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을 말하며, 그외의 기업을 비공개기업(nonpublic entity)이라 한다.

요 후속사항에 관하여 책임있는 임원간부에게 질문

g. 경영자확인서의 징구 등

이때 정규감사에 필요한 내부통제의 검토, 평가와 관련 확인증거의 입수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3) IFI review 의 보고서

동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언급되어야 한다.

a. 동 review 가 관련 review 기준서에 따라 수행된 사실

b. review 된 IFI 의 명칭

c. 적용된 IFI review 절차의 개요

d. review 의 성격(정규감사와 다른 두 가지 특징)

e. 회계사가 review 절차 중 지득한 GAAP 위배사항의 유무

그리고 IFI 의 각 페이지에는 “감사미필”(unaudited)의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참고로 중간재무정보에 대한 review report 의 견본을 아래에 제시한다.

We have made a review of [describe the information or statements reviewed] of ABC Company and consolidated subsidiaries as of September 30, 19×1, and for the three-month and nine-month periods then ended,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established by the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 review of interim financial information consists principally of obtaining an understanding of the system for the preparation of interim financial information, applying analytical review procedures to financial data, and making inquiries of persons responsible for financial and accounting matters. It is substantially less in scope than an examination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 the objective of which is the expression of an opinion regarding the financial statements taken as a whole. Accordingly, we do not express such an opinion. Based on our review, we are not aware of any material modification that should be made to the accompanying financial information (or statements) for them to be in conformity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ACCOUNTANT'S REPORT ON REVIEW OF INTERIM FINANCIAL INFORMATION FOR A PUBLIC ENTITY. (Source: ASB, AU 722. 18.)

다) 비공개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review

비공개기업의 중간재무제표 뿐 아니라 결산재무제표를 review 하는 경우 그 절차와 보고형식은 위 공개기업의 IFI review 와 대체로 같지만 다음의 점에서 그와 다르다[SSARS No. 1 para. 4].

(1) 재무제표작성기준이 GAAP 아닌 기타 포괄적 기준(현금기준 등)인 경우도 있다.

(2) 적용절차면에서 내부회계통제의 변동에 대한 질문과 경영자 확인서의 징구는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3) 보고서에서 “재무제표상 모든 정보는 경영자가 제시한 것”이라는 언급을 추가해야 한다.

(4) 재무제표의 각 페이지에는 “회계사의 review report 참조”라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참고로 비공개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review report의 견본을 아래에 제시한다.

I [We] have reviewed the accompanying balance sheet of XYZ Company as of December 31, 19XX, and the related statements of income, retained earnings, and changes in financial position for the year then ended,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established by the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ll information included in these financial statements is the representation of the management [owners] of XYZ Company.

A review consists of inquiries of company personnel and analytical procedures applied to financial data. It is substantially less in scope than an examination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 the objective of which is the expression of an opinion regarding the financial statements taken as a whole. Accordingly, I [We] do not express such an opinion. Based on my[our] review, I am [we are] not aware of any material modifications that should be made to the accompanying financial statements in order for them to be in conformity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ACCOUNTANT'S REPORT ON REVIEW OF INTERIM FINANCIAL STATEMENTS
FOR A NON-PUBLIC ENTITY. (SOURCE: SSARS No. 1, para. 35.)

타) 재무예측에 대한 review

1) 재무예측이란?

재무예측은 미래 一期 또는 수기간동안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변동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측치로서, 종래 경영자들이 내부계획용으로만 사용해왔으나 최근들어 회사의 장래전망자료로서 결산서에 매출액과 이익의 예측치를 포함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Forecast Guide, 1980].

2) 재무예측 review의 목적

재무예측 review는 회사의 요청을 받은 회계사가 아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 a. 동 예측이 경영자의 가정을 근거로 정당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 b. 동 예측이 예측기간의 역사적 재무제표에 적용될 회계원칙과 일관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 c. 근거가정이 예측의 합리적 기초가 되었는지 여부

3) 적용절차

다른 review 절차와 거의 같이 질문과 분석적 검토가 중심이 되며 이때 경영자로부터 당해에

측과 근거가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진술서를 반드시 징구해야 한다.

4) 보고서

재무예측에 대한 review report에는 아래 사항이 담겨져야 한다.

- a. 예측정보의 표시와 그 내용
- b. review가 AICPA의 관련 재무예측 review 지침¹¹⁾을 준수하여 행해졌다는 사실과 동 review의 성격
- c. 회계사는 보고일자후의 발생사건에 관하여 보고서를 수정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언급
- d. 동 재무예측이 관련 AICPA 지침에 부합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근거가정이 경영자의 예측에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계사의 언급
- e. 예측 결과의 궁극적 달성에 대한 경고문구

참고로 재무예측에 대한 review report의 견본을 아래에 제시한다.

The accompanying forecast balance sheet, statements of income, retained earnings, and changes in financial position, and summary of significant forecast assumptions of XYZ Company as of December 31, 19XX, and for the year then ending, is management's estimate of the most probable financial position for the forecast period. Accordingly, the forecast reflects management's judgement, based on present circumstances, of the most likely set of conditions and its most likely course of action.

We have made a review of the financial forecast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guidelines for a review of a financial forecast established by the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Our review included procedures to evaluate both the assumptions used by management and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forecast. We have no responsibility to update this report for events and circumstances occurring after the date of this report.

Based on our review, we believe that the accompanying financial forecast is presented in conformity with applicable guidelines, for presentation of a financial forecast established by the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We believe that the underlying assumptions provide a reasonable basis for management's forecast. However, some assumptions inevitably will not make realize and unanticipated events and circumstances may occur; therefore, the actual results achieved during the forecast period will vary from the forecast, and the variations may be material.

STANDARD REPORT ON REVIEW OF A FINANCIAL FORECAST.

(Source: Forecast Guide, p. 22.)

11) Forecast Guide에서는 재무예측작성을 위해 10종의 지침(Ten Guidelines)을 규정하고 있다(Forecast Guide, p. 47).

다. 일 본

(1) 개 요

일본에 있어서도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은 감사, 경영자문, 세무 등의 3대부문에 걸치고 있으며 다만 세무영역에서는 稅理士(한국의 세무사에 해당)가 병존하고 있어서 미국보다도 우리나라 제도와 더욱 흡사하다.

이중 감사(및 회계)업무와 관련되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대 상 업 무	비 고
정규감사업무	1. 증권거래법에 의한 감사 2. 주식회사의 감사 등에 관한 상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 3. 사립학교 진흥조성법에 의한 학교법인 감사 4. 중소기업투자육성회사의 피투자회사의 감사 5. 상품거래소의 감사 6.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 감사 7. 재단법인 일본체육협회 가맹단체의 감사	감사기준과 감사실시준칙, 감사보고준칙
중간감사업무	1.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중간재무제표 감사기준
회 계 업 무	1. 재무서류의 작성 2. 재무에 관한 조사 3. 재무에 관한 입안 4. 세리사업무(세무고문, 대리, 상담 등) 5. 회계고문, 기장대행, 상담, 결산서류 작성	

자료: 공인회계사보수규정, 일본 공인회계사협회 1986.

법정감사의 표준보수규정, 일본공인회계사협회, 1986.

세리사업무보수의 최고한도액에 관한 기준, 일본세리사연합회, 1980.

회계업무보수의 최고한도액에 관한 기준, 일본 세리사연합회, 1980.

(2) 정규감사와 중간감사

일본의 정규감사업무는 당초 1951년에 증권거래법에 따라 회계제도의 정비운용상황에 관한 감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제도감사로 시작하였으며, 1957년에 와서야 외상매출금의 확인과 재고자산의 실사업회를 의무화하는 정규감사로 이행되었으며, 그후 1965년에 이르러 상법감사 및 감사법인이 제도화되고 관계회사에 대한 감사와 계속성(consistency)의 변경에 대한 감사를 보다 엄격히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상태로 진입하였다.¹²⁾

그리고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중간감사는 현재까지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상장회사가 매반기(6개월)에 제출하는 반기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약식감사로서 '중간재무제표감사 기준'에 의하면 실사, 입회, 확인 등을 행하지 않고 계정분석, 질문 등으로 각 계정과목의 금

12) 企業會計審議會特別部會, 小規模會社に對する外部監査にかかる實態調査報告, 會計ジャーナル(1985. 9), pp.37~8.

액적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3) 최근의 동향

그러나 최근 1986년 5월 법무성에서 상법, 유한회사법 개정시안을 발표하고서 소규모회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아닌 '회계조사'를 제안하고 있다.¹³⁾

회계조사인의 調査는 일명 한정감사, 簡易감사라고도 하며 시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상 :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있지 않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서 자본금 3,000만 엔 이상 또는 부채총액 3억엔 이상인 주식회사와 자본금 1억엔 이상 또는 부채총액 10억엔 이상인 유한회사는 회계조사인의 조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나) 성격 : 회계조사인의 조사는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상응하는 회계장부에 근거하여 작성되어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내용은 상응하는 회계조직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회계장부상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기말의 재산(자산 및 부채)의 실재성과 망라성(대차대조표항목) 및 기중에 있어 거래사실등과의 대응(손익계산서항목)이 일견 인정되는지 여부(장부상 자산, 부채, 거래사실 등에 관한 기록으로서의 타당성)를 음미하고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공시와의 사이에 중요한 불일치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 절차 : 조사의 절차로서는 조회, 질문 그리고 진술서의 징구, 실사, 입회, 확인 이외에 적당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등사를 하는 권리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는 권리 및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권리를 인정한다.

(라) 조사인의 책임 : 조사인은 조사를 통하여 상법에 규정한 회계장부와 함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응 검증할 상당한 주의의무를 진다. 이 경우 심증의 정도는 '정규감사'보다 낮고 '일응 확실함'으로 可하며 실제의 조사정도는 조사인이 그 주의의무에 따라서 판단하고 실시한 내용을 보고서상 '조사방법의 개요'에서 밝히기로 하며 조사인이 대차대조표 등의 작성을 맡은 경우에는 적어도 기장의 기초가 되는 원시기록의 작성에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

(마) 보고서 : 조사보고서에는 조사방법의 개요, 조사인의 자격(다른 회계사무, 예컨대 세무, 재무제표의 작성, 회계장부의 기장대행 등을 한 때는 그 뜻을 기재한다)을 기재하고, 그 공시는 감사보고서와 같은 방식으로 다룬다.

(바) 조사인의 자격 : 회계조사인의 기본적 자격은 공인회계사, 감사법인, 회계사시보 및 세리사로 하며, 이때 조사인은 피감사회사의 이사나 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調査案 외에 법 개정시안에는 指導案(소규모 회사의 장부와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작성되도록 회계조직의 정비 등에 관해서 세리사를 포함한 회계전문가들이 경리를 지도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제안)도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특히 회계조사인 등의 자격 [감사전문가가 아닌

13) 法務省 民事局, 商法・有限會社法改正案 原文, 企業會計, 1986. 7 (Vol.38, No.7), pp.61~64.

세리사(한국의 세무사格)가 포함되고 있음]과 조사의 성격 및 절차[감사와의 확연한 구별이 용이하지 않음] 등의 점에서 일본 공인회계사협회에서는 이를 반대 내지 재검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¹⁴⁾ 따라서 아직까지 조사의 실시절차와 보고서문안 등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초 대소회사 구분입법의 시안상 취지가 소규모회사는 내부통제조직이 완비되지 못하며 그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지 않는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같이 시간 및 금전적 부담이 큰 정규감사를 받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감사제도의 개혁 내지는 감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만큼 공인회계사협회의 희망처럼 정규감사확대안으로 낙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예정보다 1년 유보된 의회상정시기인 1989년초의 결말이 주목된다 하겠다.

3. 기존연구의 검토

본 연구의 주제인 회계감사업무의 차별화란 마케팅분야의 제품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에서 빌어온 개념으로서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업무 중 광의의 감사적 성격의 업무(auditing & accounting services)를 계층화시켜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여 감사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도록 하는 감사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수평적 차별화(horizontal differentiation)와 수직적 차별화(vertical differentiation)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인 水平的 差別化는 감사인조직 상호간 감사업무의 질적 차등화를 말하며 하나의 감사계약에 대하여 감사인간의 보수(audit price) 차이로써 구체화된다. 한편 후자인 垂直的 差別化는 감사인간의 질적 차이는 고려함이 없이 감사인의 책임부담과 투입시간 등에 따라 감사업무를 차등화하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 감사업무의 종류별로 보수가 다르게 매겨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감사보수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공인회계사보수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현실이므로 수평적 차별화보다는 수직적 차별화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등장되고 있다 하겠다.

감사업무의 차별화에 관한 연구 역시 앞서 차별화의 유형별로 2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수평적 차별화의 문제는 제외하고¹⁵⁾ 본 논문의 초점인 수직적 차별화에 관해서만 검토해보기로 한다.

가. Pany와 Smith의 연구

K. Pany와 C.H. Smith(1982)는 감사인의 관련정도가 상이한 업무의 신뢰도에 대한 이용자

14) 森實, 中小會社監査に對する, 一つのアプローチ, 日本會計學會, 會計, 第131卷 第3號(1987. 3), pp.323~36. 日本公認會計士協會, 商法・有限會社法 改正試案に對する 意見, 會計(1987. 1), pp.57~60.

15) 수평적 차별화를 다룬 논문에는 Simunic(1980), Shockley and Holt(1986) 등이 있으며 감사인간 질적차이 유무에 대하여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의 인식정도를 조사하였다.

즉 미국 중서부 소재 5개 대규모은행에 근무하는 57명의 재무분석가를 조사대상으로 6종의 가상상황을 설정하여 종속변수를 분기재무정보의 신뢰도로 하고, 독립변수는

1) 감사인의 관련형태(form of auditor association)

- (1) 감사인 무관련(no auditor association)
- (2) 기말검토후 감사미필주식으로 기재(year-end review of quarterly information through footnote)
- (3) 의견거절한 분기검토(quarterly review of quarterly information with a disclaimer of opinion)
- (4) 분기별 정규감사(quarterly audit)

2) 과거 분기별 정보의 정확성

- (1) 정확한 경우
- (2) 부정확하여 추후 수정한 경우

3) 정보의 예상치와의 일치성

- (1) 예상보다 나은 경우
- (2) 예상대로인 경우
- (3) 예상보다 못한 경우

로 각 구분하여 $4 \times 2 \times 3$ ANOVA(analysis of variance) Test를 적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첫째 정보이용자는 감사인 무관련 경우 [위 1)-(1)]와 다른 3종의 감사인 관련 경우와를 뚜렷이 구별 인식하고 있었으며, 둘째 감사인 관련형태에 따라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다르게 보아(alpha=0.05) 특히 기말검토 [위 1)-(2)]와 정규감사 [위 1)-(4)]간 신뢰도 차이가 큰 반면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별차이를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셋째 각 독립변수 간의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s)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나. Arnold와 Diamond의 연구

Jerry L. Arnold와 Michael A. Diamond(1981)는 비공개기업에 제공되는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대한 회계사와 은행원의 경험, 반응 및 태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1979년에 공표된 AICPA Statement on Standards for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SSARS) No.1 "Compilation and Review of Financial Statements"의 실무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부차적 목적도 있다.

동 연구의 주요문제는

- (1) audit과 review 내지 compilation간의 업무이동 실태는?
- (2) 서비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3) 각종 서비스의 비용면 비교는?

(4) 각종 서비스의 적정조건에 관한 회계사와 은행원의 인식은?

들이었으며, 연구방법으로는 전국의 회계사와 은행원을 대상으로 설문서를 발송 회수하였으며, 이를 각각 규모별, 대상별로 통계분석한 결과 공인회계사 그룹은 SSARS No.1의 공후표에 약간의 기업이 Audit→review 이동이 있었으나 더 많은 수가 nonaudit→review 내지 audit 으로 이동함으로써 전반적으로 service가 확장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각종 서비스의 비용면에서는 (1) compilation without disclosures→(2) compilation with disclosures→(3) review→(4) audit의 순으로 투입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그에 따른 보수청구액 차이를 예견케 했으며 전반적으로 SSARS No.1의 공표로 소요시간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집계되었다.

한편 은행원그룹은 회계사보다 SSARS No.1의 영향을 크다고 보면서 다만 unaudit와 compilation 및 review의 구별이 어려우므로 좀더 명확히 구분짓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고객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통적인 대출요소(대출금규모, 고객의 자본구조)이지 회계사무소의 크기나 명성은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의견이었다.

결론에서 동조사보고서는 아래 사항을 건의하고 있다.

첫째, 회계사업계는 계속하여 비공개회사에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할 것.

둘째, 회계사는 은행원에게 unaudited services의 의미를 교육함은 물론 compilation, review 그리고 audit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것

셋째, 회계사업계는 소속 CPA로 하여금 비공개기업들에게 감사미필(unaudited)로 인한 의견거절을 하지 않도록 의식을 고양할 것.

다. 박승현과 신준용의 연구

양 교수는 고려대 기업경영연구소가 주관한 연구(1987)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감사보고서 활용 방안으로 외부감사대상기업(auditee)을 상장, 우량, 중견등록법인과 일반등록, 기타법인으로 二大別한 후 전자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경영자간 정보의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에 기인한 경영자측의 고의적 오류(intentional error)를 제거하기 위해 외부감사가 필요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감사효익이 감사비용보다 커서 별 거부감없이 수용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나 다만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개발될 것을 요구하였고, 후자의 경우에는 회계시스템의 미비 내지 운영상 미숙에 기인한 비고의적 오류(unintentional error)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회계감사가 필요한데 이들 기업의 내부감사가 미약한 현실에서 이를 외부감사로서 보충 내지는 대치할 욕구가 있으며, 다만 외부감사수용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정규모감사만 적용하면 감사투입시간과 비용만 많고 감사효익은 별로 없다는 등 외부감사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바 감사서비스의 다양화를 요구하였다.

특히 후자인 일반등록법인과 기타 법인이 외부감사대상전체의 약 70%를 점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감사보고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¹⁶⁾

첫째, 다양한 감사서비스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구분한다.

회계시스템의 입안과 운영개선에 관한 회계측면서비스와 법인설립, 한정검토(약식감사 또는 반기검토 등), 경영진단, 세무조정, 계산증명 등의 비회계측면서비스로 구분한다.

둘째, 구분된 다양한 감사서비스를 감사인의 투입비용에 비례해서 수직적 업무차별화(vertical audit service differentiation)를 행한다. 예컨대 계산증명→세무조정→회계시스템설계→경영진단→한정검토 등으로 수직적 업무 차별화함으로써 감사인에게 축소된 책임에서 점진적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확장된 책임으로 증가시켜 나가도록 한다.

셋째, 피감사회사는 수직적 업무차별화에 따라 합리적 수준의 차등적 서비스 비용으로 경영 전반의 업무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초점인 감사업무차별화와 관련있는 국내연구로서 유일한 박 승현 등의 위 연구는 감사대상업체(auditing entity)의 선정기준에 주력하고 감사업무차별화는 마지막 1개장에서 실증적 뒷받침 없이 감사보고서의 활용방안만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여기에서 연구 idea를 얻어 이를 제도 및 이론적으로 좀더 탐구한 뒤 약식감사 내지 한정감사를 중심으로 한 감사업무의 차별화 내지 다양화에 관한 實證研究를 하기로 하였다.

Ⅲ. 실 증 연 구

1. 연구의 설계

가. 가설의 설정과 변수의 정의

(1) 가설의 설정

(가) 회계사의 업무별 책임차이에 관한 가설

앞서 제도 및 문헌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회계사의 관련정도(level of association)에 따라 그 업무는 정규감사, 검토, 기업진단, 계단확인, 기장대리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에 관한 책임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코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_0^1 : 회계사의 관련정도에 따라 업무별로 책임차이가 없다.

H_a^1 : 회계사의 관련정도에 따라 업무별로 책임차이가 있다.

(나) 이해관계자 집단간의 인식차이에 관한 가설

회계사가 서명날인하는 업무에는 정규감사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집단

16) 동 연구보고서에서는 “감사서비스”의 범위를 “공인회계사의 모든 서비스”로 넓혀 회계시스템설계와 세무조정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감사인, 피감사회사, 정보이용자)은 이들 업무사이에 부여하는 신뢰수준 내지는 감사인의 책임정도를 인식함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모두 정규감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주로 정보이용자측)도 있고 혹은 “공인회계사의 서명날인이 있더라도 감사범위의 한정이나 의견표명의 거절문구가 있으면 책임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주로 감사인측)도 있다.

따라서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코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_0^2 : 이해관계집단간에 감사인의 책임정도 인식상 차이가 없다.

H_2^2 : 이해관계집단간에 감사인의 책임정도 인식상 차이가 있다.

(다) 조사대상집단내 특성간의 인식차이에 관한 가설

또한 조사대상집단별로 특성을 세분하여 (1) 피감사회사(auditee)는 규모별로, (2) 보고서 이용자(user)는 업종별로 (3) 감사인(auditor)은 조직형태별로 인식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가설로 설정하였다.

- 1) $\begin{cases} H_{03}: \text{피감사회사의 규모별로 감사인의 책임도 인식에 차이가 없다.} \\ H_{a3}: \text{피감사회사의 규모별로 감사인의 책임도 인식에 차이가 있다.} \end{cases}$
- 2) $\begin{cases} H_{04}: \text{보고서 이용자의 업종별로 감사인의 책임도 인식에 차이가 없다.} \\ H_{a4}: \text{보고서 이용자의 업종별로 감사인의 책임도 인식에 차이가 있다.} \end{cases}$
- 3) $\begin{cases} H_{05}: \text{감사인의 조직형태별로 감사인의 책임도 인식에 차이가 없다.} \\ H_{a5}: \text{감사인의 조직형태별로 감사인의 책임도 인식에 차이가 있다.} \end{cases}$

(2) 변수의 정의

가설의 검정을 위하여 추상적 변수를 다음과 같이 측정가능한 용어로 操作(operationalization)하였다.

(가) 회계사의 관련정도에 따른 업무 구분

현실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實定法인 「공인회계사법」과 공인회계사협회의 「보수규정」상 회계사의 직무구분을 원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혼란이 많은 ‘기업진단’과 ‘정리’에 대하여는 그 개념을 묻는 문항을 별도로 두었다.

(나) 감사인의 책임정도

중극적으로 감사인이 저야 할 책임은 명료성의 측면에서 법적 책임으로 한정하고 이에 부여하는 이해관계인의 신뢰수준을 Likert 5-point scale 에 의거하여¹⁷⁾ 완전신뢰—다소신뢰—보통—다소불신—완전불신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구체적 사례로서 시사성 있는 ‘어음발행으로 인한 부외부채’의 감사에 필요한 감사인의 책임정도를 업무와 관련시키면서 묻는 문항을 별도로 두었다.

17) Scale point의 적정수에 대하여는 최소 5개이면 그 이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R.W. Lissitz and S.B. Green, "Effect of the Number of Scale Points on Reliability: A Monte Carlo Approac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60, No.1(1975) p.12 참조).

나. 표본 선정과 자료수집 방법

(1) 표본선정

3 그룹의 모집단에 대하여 표본틀(sampling frame)과 표본선정방법은

(가) 보고서이용자집단은 1987. 1. 1 현재 전화번호부를 근거로

은행(특수은행 제외, 지방은행 포함) 18 개사

증권회사 25

보험회사 19

투자신탁회사 4

단자, 리스회사 47

정부기관(진단보고기관) 4

계 117 개 사를 표본틀로 하되

절대수를 감안하여 100% 全數調查하기로 하였고,

(나) 피감사회집단은 1987. 1. 1 현재 증권감독원의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하며, 회사의 크기는 매출액이나 납입자본금도 가능하지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시행기준인 자산총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자산총액 1,000 억원 이상(제 1 계층) 263 개사

1,000 억원 미만 70 억원 이상(제 2 계층) 1,597

70 억원 미만(제 3 계층) 1,405

계 3,265 개 사를

표본틀로 하되 각층별 規模에 비례한 層化 체계적추출법(Proportionat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을 사용, 각층에서 90% 상당인 26,160,141 개, 합계 327 개 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으며,

(다) 감사인집단은 1987. 3. 31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원명부」를 근거로 專業공인회계사 1,412 명(회계법인소속 1,185 명, 합동회계사무소소속 179 명, 개인감사인 48 명)을 표본틀로 하되 예비조사에 의거 단순체계적추출법(simple 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하여 10%를 상회하는 147 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2) 자료수집방법

나. 조사의 현실성, 자료의 습득가능성, 대상의 협조가능성, 추출표본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조사(pilot survey)를 실시한 후

(2) 설문지의 문안을 세 집단(보고서 이용자, 피감사회사, 감사인)으로 나누어 작성하되 집단간 인식차이를 파악하고자 I. (일반사항)만 달리하고 II. (공인회계사직무구분에 관한 사항)와 III. (감사업무차별화 관련 사항)은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3) 事前檢査(pre-testing)을 통하여 내용의 타당성(content validity)을 높이도록 설문지를 검토, 수정한 후

(4) 설문지를 인쇄하였다

다. 분석방법

(1) 記述統計分析

일반사항에 의거 人口學的 자료분석(demographic data analysis)를 실시하고,

(2) 측정의 신뢰성 및 타당성의 검토

(가) 설문지상 응답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 內的 一貫度(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인 Cronbach's alpha test를 하며,

(나) 概念妥當性(construct validity)의 검토를 위해 要因分析(factor analysis)을 시행한다.

(3) 假說의 檢定(hypotheses testing)

(가) 有意性검정시 제 I 종 오류인 $\alpha=0.05$ 로 하며

(나) 正規性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Kolmogorov-Smirnov Goodness of Fit test를 실시한 뒤

(다) 세 조사대상 집단간의 유의적 차이유무 검토를 위해 설문지의 응답이 non-metric scale 이므로 주로 非母數統計(non-parametric statistics)를 사용하기로 하되 전반적으로는 다변량 분석기법(예—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을 적용하고 개별항목별로는 단일변량분석기법(예—Kruskal-Wallis one-way ANOVA)을 적용하여 가설검정한다.

(라) 그룹내 특성별 차이유무에 대한 가설검정은 Breakdown(SPSS/PC+상 Means) 기법을 이용하여 검정한다.

2. 통계적 분석과 해석

가.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현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피감사회사(I)	보고서이용자(II)	감사인(III)	계
우송수(A)	327 개사	117 개사	147 명	591
반송수(B)	19	1	—	20
배포수(C)(=A-B)	308	116	147	571
회수수(D)	47	30	83	160
회수율(D/C)	15.3%	25.9%	56.5%	28.0%

표본회수율이 15.3%~56.5%에 그치고 있는 바 대표성이 문제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응답자

의 표본분포를 작성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나. 설문응답자의 표본분포

(1) 피감사회사그룹

자 산 종 액	응 답 한 표 본		모 집 단	
	기 업 수	비 율	기 업 수	비 율
70억원 미만	14개사	31.2%	1,405개사	43.0%
70~1000억원 미만	22	48.8	1,597	48.9
1000억원 이상	9	20.0	263	8.1
계	45개사	100%	3,265개사	100.0%

(missing: 2)

(2) 보고서 이용자그룹

업 종	응 답 한 표 본		모 집 단	
	기 업 수	비 율	기 업 수	비 율
은행	10개사	34.5%	18개사	15.4%
증권회사	7	24.1	25	21.4
투자신탁회사	1	3.5	4	3.4
보험회사	2	6.9	19	16.2
정부기관	2	6.9	4	3.4
단체·리스	7	24.1	47	40.2
계	29	100.0%	117	100.0%

(missing: 1)

(3) 감사인 그룹

조 직 형 태	응 답 한 표 본		모 집 단	
	회 계 사 수	비 율	회 계 사 수	비 율
회 계 법 인	72명	87.8%	1,185명	83.9%
합 동 사 무 소	6	7.3	179	12.7
개 인 감 사 반	4	4.9	48	3.4
계	82명	100.0%	1,412	100.0%

(missing: 1)

이상과 같이 각 그룹별로 회수된 표본은 숫자상으로 충분치는 못했지만 현실을 대표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가) 신뢰성(reliability) 검토

측정의 신뢰성이란 측정된 결과의 일관성, 의존가능성, 안정성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측정을 되풀이했을 때 비체계적 오차가 없도록 하여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한다.

이러한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1) test-retest 법, (2) Cronbach's alpha 계수법, (3) Spearman-Brown 계수(split-half)법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계수법(일명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¹⁸⁾을 이용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1) 회계사 직무구분에 관한 사항(설문지 Section II)의 신뢰성

〈부록 表 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lpha=0.30763$ 이지만 X16(회계통제직설계, 정비), X19(재무분석), X21(세무조정계산)의 세 문항에 대한 응답은 corrected item-total 상관계수가陰이므로 이를 제거했을 경우 α 는 각각 0.32432, 0.37589, 0.32726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X16, X19, X21의 세 문항을 분석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2) 감사업무차별화에 관한 사항(설문지 Section III)의 신뢰성

회수된 설문지에서 missing이 많은 X26-X37을 제외시키고 신뢰성 검토를 한 결과 〈부록 表 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alpha=0.17321$ 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X43(감사인의 책임범위)에 대하여는 corrected item-total 상관계수가陰이므로 이를 제거했을 경우 α 는 0.300031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X43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나) 타당성(validity) 검토

측정의 타당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말하며 이것은 체계적 오류와 관련되는 개념이다. 이것에는 평가방법에 따라 content validity, criterion-related validity, construct validity의 세 가지가 있는데 validity 중 양적으로 평가대상이 되는 것은 construct validity로서 이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에는 (1) multitrait-multimethod matrix와 (2) factor analysis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후자인 factor analysis(요인분석법)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1) 회계사 직무구분에 관한 사항(Section II)의 타당성

설문지상 X8-X24의 17개 변수는 〈부록 表 I-3〉에 나타난 바와 같이 Eigen value가 1 이상인 6개의 Factor로 나타났으며(설명력은 59.8%) 이는 설문지상 큰 문항의 수와 일치하고

18) Cronbach's $\alpha = \frac{k}{k-1} \left(1 - \frac{\sum_{i=1}^k \sigma_i^2}{\sigma_y^2}\right)$ k : 항목수 σ_i^2 : 총분산 σ_y^2 : 각 항목의 분산

F.N. Kerlinger,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Holt, Rinehart and Winston, 3rd ed. (1986), pp.408~13. 및 L. Cronbach, "Coefficient Alpha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Tests," Psychometrika 16(1951) pp. 297~334.

있다(각 Factor 의 이름은 structure matrix 상 factor loading > 0.4 인 변수들의 조합으로 새로 부여 가능) 이를 Structure Matrix 에서 관련변수를 점검한 결과 탈락되는 변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각 변수의 개념구성상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2) 감사업무차별화에 관한 사항(Section III)의 타당성

설문지상 X25-X47 의 23개 변수는 <부록 表 I-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역시 Eigen value 가 1 이상인 8개의 Factor 로 조합되었는데(설명력은 68.2%), 이는 설문지상의 문항 7개와 제 2항에서의 계층화와 신뢰도부여의 2분화의 결과로 해석되고 또 Structure Matrix 점검결과 탈락변수가 없어 개념타당성면에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라. 분포의 正規性 검토

또 설문지의 응답 중 감사업무별 법적책임의 계층화가능성에 대한 변수(*38~42)에 대한 것을 等間尺度로 간주할 경우 소표본 아래서 정규분포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Kolmogorov-Smirnov 적합도 검정(goodness of fit test)을 행하여 보았다.¹⁹⁾

Group I (Client), Group II (User), Group III (CPA) 모두 two-tailed test 한 결과 대부분의 P 값이 통상적 유의수준 0.05 보다 작아서(SPSS/PC+ 결과별첨) 'Ho : 주어진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한다'를 棄却함으로써 정규분포가정을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필자는 아래가설 檢定에서는 非母數統計分析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마. 연구가설에 대한 감정

(1) 회계사업무별 책임차이에 관한 가설의 test

여기서 검정하고자 하. 가설은 다음과 같다.

H_0' : 회계사의 관련정도에 따라 업무별로 책임차이가 없다.

H_a' : 회계사의 관련정도에 따라 업무별로 책임차이가 있다.

앞서 변수의 정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사의 관련정도에 따른 업무구분'은 현행 「회계사법」과 「보수규정」상의 직무구분을 원용하여 회계감사—회계감정—회계입안—계산정리 등으로 구분한 후 몇 개의 작은 문항으로 세분하여 질문하였다.

가) '감사'와 '감정' 등의 관계

「감사와 감정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 대하여(변수번호 : X8) 전 그룹에 걸쳐 감사를 감정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71.7%).

19) 원래 Kolmogorov-Smirnov 適合度檢定은 ordinal 또는 metric data 에 대하여 모수가 알려졌을 때만 사용되어야 하나(모수 추정에 의한 경우는 오히려 Lilliefors test 가 많이 쓰임) 주로 nominal data 의 대표본에 쓰이는 Chi-square goodness of fit test 보다는 더 정확하다고 하여 모수를 모르는 경우에도 선호되고 있다. W.J. Conover, Practical Nonparametric Statistics, 2nd ed. 1980—김병수의, SPSS 를 이용한 통계자료분석, 박영사, 1987 pp. 463~4에서 재인용

감사=감정 (6.9%)	
감사>감정 (71.7)	
감사<감정 (18.2%)	
모르겠다 (3.1%)	

그러나 「감정과 증명의 구별」에 관한 질문(X 10)에 대하여는 상호구별이 잘 되지 않고 있었다(감정>증명-40.3%, 감정<증명-27.7%)

나) '정리'의 해석

「회계사의 직무중 '정리'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항(X11)에 대한 응답에서는 다소 혼선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회사정리법상의 업무로 보는 견해도 꽤 있어 보다 명료한 定義 규정이 차후 법령개정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대리 (17.0%)	
재무분석 (16.4%)	
기장대리+재무분석 (39.6%)	
회사정리절차 (15.7%)	

다) '기업진단'의 해석

「현실적으로 회계사가 행하고 있는 기업진단의 성격은 무엇으로 보느냐(X 24)는 문항에 대하여 전 그룹에 걸쳐서는 교과서적으로 경영평가로 해석하지만(41.7%) 반대로 이를 감사적인 업무로 보는 견해도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경영평가 (41.7%)	
정규감사 (5.8%)	
약식감사 (35.9%)	
계산확인 (16.7%)	

그러나 이를 대상 group 별로 분석해 보면 보고서 이용자 group 과 피감사회사 group 은 대체로 경영평가로 보지만(56.7% 및 45.7%) 감사인 group 은 약식감사적 업무로 인식하는 점(46.3%)이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그룹간 동질성여부에 대한 Kruskal-Wallis one-way ANOVA 에 의한 때도 p-value 가 0.0491 로서 유의수준 0.05 에서 귀무가설을 棄却하여 세 group 간에 유의적인 인식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검증되는데서도 알 수 있다(아래표 참조)

Kruskal-Wallis 1-way ANOVA

X 24
by X 1

Mean Rank	Cases
72.77	46 X1=1(피감사회사)
66.42	30 X1=2(보고서 이용자)
86.32	80 X1=3(감사인)
	156 Total

Corrected for Ties

CASES	Chi-Square	Significance	Chi-Square	Significance
156	5.2857	.0712	6.0296	.0491

라) 업무계층별 감사인의 책임수준의 차

각 업무별로 감사인이 저야 할 책임의 輕重을 각 보고서의 작성 내지 이용시에 부여하는 신뢰도의 수준으로 Likert의 5-point scale을 이용하여 완전불신(0)—다소불신(1)—보통(2)—다소신뢰(3)—완전신뢰(4)로 분류토록 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평균신뢰도	비 고
제 1 계 층	2.763	회계감사
제 2 계 층	2.640	회계감정
제 3 계 층	2.477	회계업안(MAS 등)
제 4 계 층	2.592	제산정리(기업진단)
제 5 계 층	2.522	세무대리

즉 위 계층일수록 회계사의 책임이 크나 제4-5계층은 제3계층보다 책임이 더 높게 나왔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관련 문항(Ⅱ의 5항—변수 X25)이 회계사보수규정상 5구분을 순서대로 의식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순수 MAS에 속하는 회계업안업무보다 기업진단(제4계층)과 세무대리에 속하는 세무조정계산(제5계층) 등에 더 큰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의 1계층도 평균척도가 3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최하의 어느 계층도 2 이하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회계사에게 아주 큰 신뢰도 주지 않는 반면 보통(척도 2) 이상의 신뢰를 요구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이해관계집단간의 인식차이에 관한 가설의 test

여기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_{20} : 이해관계자집단간에 감사인의 책임정도 인식상의 차이가 없다.

H_{2a} : 이해관계자집단간에 감사인의 책임정도 인식상 차이가 있다.

각 이해관계자집단사이에 “회계사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그 어떤 업무라도 책임정도가 동일하

다”, 또는 “회계사의 서명날인이 있더라도 감사범위에 제한이나 의견표명의 저절문구가 있으면 책임정도가 다르다” 등으로 의견이 구구한 바 이에 대하여 그룹간 인식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가) 다변량통계분석기법에 의한 검정

두개 이상의 독립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써 多重判別分析(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MDA)을 이용하여 설문지의 Section II와 Section III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직무구분에 관한 인식측면

설문지(부록참조) Section II의 6 문항 17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세 group의 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다중판별분석(MDA)에 의해 검증한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s									
Fcn	Eigenvalue	Pct of Variance	Cum Pct	Canonical Corr	After Fcn	Wilk's Lambda	Chisquare	DF	Sig
					0	.3933	119.925	28	.0000
1*	1.0439	81.05	81.05	.7147	1	.8038	28.068	13	.0089
2*	.2441	18.95	100.00	.4430					

*marks the 2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s remaining in the analysis.

즉 2개의 판별함수가 구해지며 각각 p 값이 0.0000 과 0.0089 이므로 유의성이 높아서 H_0 를棄却하게 되어 그룹간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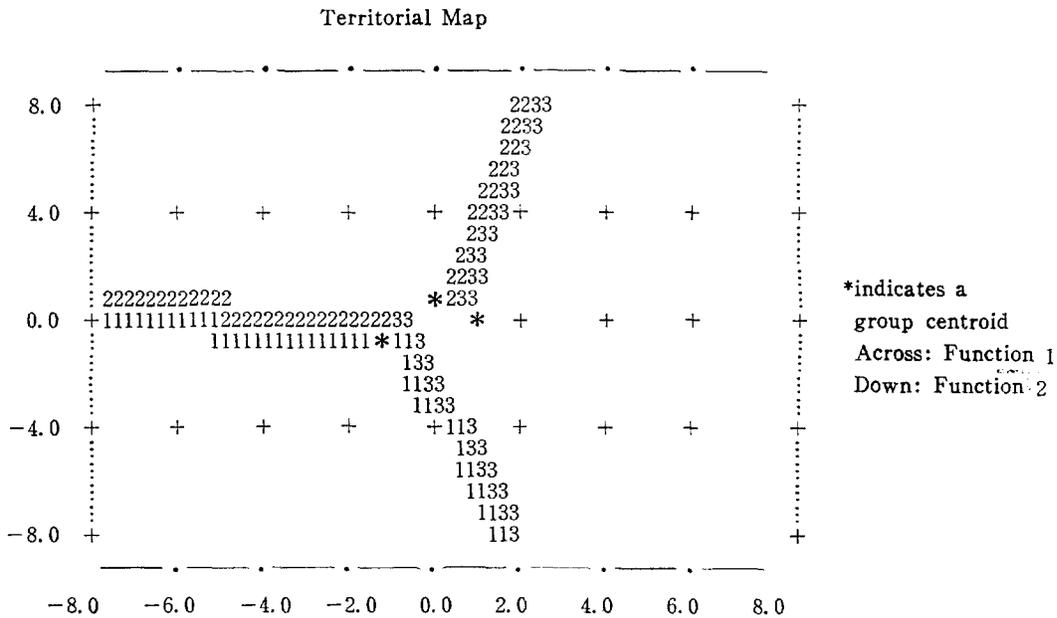
이때 판별함수는 stepwise selection에 의거 14 단계에 걸쳐 Wilk's Lambda가 큰 것부터 14개 변수가 선택되어 각각 결합되었으며(Summary Table 참조) 각 변수의 판별식에의 기여도는 아래 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에 제시되고 있다.

Summary Table						
Step	Action Entered	Action Removed	Vars In	Wilk's Lambda	Sig.	Label
1		X19	1	.74156	0.0	
2		X23	2	.61465	0.0	
3		X13	3	.57528	0.0	
4		X10	4	.54401	0.0	
5		X24	5	.51840	0.0	
6		X18	6	.49564	0.0	
7		X11	7	.47665	0.0	
8		X16	8	.46178	0.0	
9		X12	9	.44348	0.0	
10		X21	10	.43032	.0000	
11		X22	11	.41453	.0000	
12		X 8	12	.40699	.0000	
13		X20	13	.39997	.0000	
14		X15	14	.39327	.0000	

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FUNC 1	FUNC 2
X 8	.09908	.29417
X10	.06383	.37057
X11	.17253	-.36260
X12	-.29176	-.03664
X13	.40533	-.41061
X15	-.11816	.30814
X16	-.32624	-.26865
X18	-.18950	.20311
X19	.74736	.03225
X20	-.07357	.29831
X21	-.02753	.50024
X22	.22721	-.23950
X23	-.61111	-.18774
X24	.42065	.13462

그리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마지막으로 분류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이 hit ratio가 74.64%로²⁰⁾ 위 판별식이 양호하게 그룹간 구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룹간에 회계사의 직무구분에 관한 인식이 다르다고 하겠다.

Classification Results

Actual Group	No. of Cases	Predicted Group Membership		
		1	2	3
Group 1	32	19	1	12
		59.4%	3.1%	37.5%
Group 2	28	6	11	11
		21.4%	39.3%	39.3%
Group 3	78	5	0	73
		6.4%	.0%	93.6%

Percent of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 74.64%

※ Classification Processing Summary

160 Cases were processed.

0 Cases were excluded for missing or out-of-range group codes.

22 Cases had at least one missing discriminating variable.

138 Cases were used for printed output.

2) 업무차별화에 관한 인식측면

부록의 설문지 Section III의 7문항 중 missing이 많은 제 2항을 빼 6문항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세 group의 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역시 MDA로 검증하면 아래 결과와 같았다.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s

Fcn	Eigenvalue	Pct of Variance	Cum Pct	Canonica Corr	After Fcn	Wilk's Lambda	Chisquare	DF	Sig
					0	.6262	57.347	8	.0000
1*	.5034	88.99	88.99	.5787	1	.9414	7.398	3	.0602
2*	.0623	11.01	100.00	.2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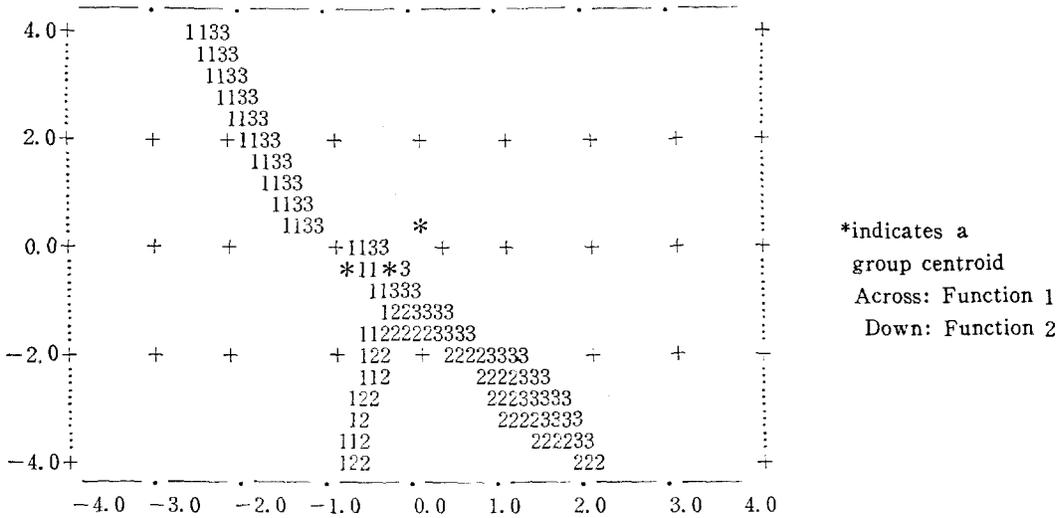
*marks the 2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s remaining in the the analysis.

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FUNC 1	FUNC 2
X25	.42025	.54721
X43	-.33603	-.51707
X45	.18417	.56806
X46	.80223	-.56415

20) 이를 각 group size가 unequal한 경우의 기준치인 proportional chance criterion $C_{pro} = \left(\frac{32}{138}\right)^2 + \left(\frac{28}{138}\right)^2 + \left(\frac{78}{138}\right)^2 = 0.42$ 인 것과 비교할 때 Hit-ratio가 0.42(1+0.25)=0.525보다 상당히 큰 74.64%이므로 잘된 판별식이라 할 수 있다(J.F. Hair, Jr. et al, Multivariate Data Analysis, 1979 pp.102~103 참조).

Territorial Map



Classification Results

Actual Group	No. of Cases	Predicted Group Membership		
		1	2	3
Group 1	42	21	2	19
		50.0%	4.8%	45.2%
Group 2	27	9	2	16
		33.3%	7.4%	59.3%
Group 3	79	6	2	71
		7.6%	2.5%	89.9%

Percent of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 63.51%

즉 stepwise selection 에 의거 4 개의 독립변수가 선택되어 2 개의 판별함수가 구해지며 설명력이 각각 약 89%와 약 11%이다. 그리고 이들 두 판별함수(territorial map 참조)에 의한 hit-ratio 는 63.51%로서 이것 역시 proportional chance criterion 에 의한 때 $0.39(1+0.25)=0.49$ 보다 높으므로 대상 group 을 잘 구별하고 있다. 즉 대체로 그룹간 감사업무차별화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단일변량통계분석기법에 의한 점정

이는 위의 다변량통계분석기법과는 달리 非母數統計기법인 Kruskal-Wallis one-way ANOVA

에 의거 주요관심사항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1) 감사와 증명의 직무 구분

역사적으로 회계감사교과서에서부터 오늘날 회계사법령에 이르기까지 혼선을 빚고 있는 ‘감사’와 ‘증명’의 두 개념에 대하여(설문지 II-2: 변수번호 X9)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량 $T_{kw} < X^2(3 \sim 1)$ 은 11.5206 으로서 p 값이 0.0032 이고 따라서 ‘ H_0 : 세 그룹의 모평균이 모두 같다’는 가설을 棄却하여 이해관계집단간 인식이 같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Kruskal-Wallis 1-Way ANOVA				
X9				
by X1				
	Mean Rank	Cases		
	63.66	47	X1=1 (피감사회사)	
	84.00	30	X1=2 (보고서 이용자)	
	88.77	83	X1=3 (감사인)	
		160	Total	
			Corrected for Ties	
Cases	Chi-Square	Significance	Chi-Square	Significance
160	9.0255	.0110	11.5206	.0032

2) 업무종류별 법적책임의 차등여부

설문지 III-1(변수 X25)에서 언급한 ‘회계사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사업무간에 법적책임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아래와 같이 $p=0.0014$ 로서 $\alpha=0.05$ 에서 귀무가설을 棄却하여 세 group 간에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각 그룹별 답변빈도는 Contingency table 참조).

Kruskal-Wallis 1-Way ANOVA				
X25				
by X1				
	Mean Rank	Cases		
	67.86	45	X1=1(피감사회사)	
	64.74	29	X1=2(보고서이용자)	
	89.21	82	X1=3(감사인)	
		156	Total	
			Corrected for Ties	
Cases	Chi-Square	Significance	Chi-Square	Significance
156	9.7339	.0075	13.1319	.0014

3) ‘어음발행으로 인한 부외부채의 감사’에 대한 감사수준

감사업무차등화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사성있는 문항으로(설문지 III-6 변

수 X 46) '수년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어음발행으로 인한 부외부채를 감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감사수준에 대한 견해'를 묻은 결과 $T_{kw}=42.54$ 로서 p 값이 0.0000 으로 $\alpha=0.05$ 에서 귀무가설을 棄却하여 세 이해관계집단간 인식이 동일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Kruskal-Wallis 1-Way ANOVA

X46
by X 1

Mean Rank	Cases	
50.76	46	X1=1 (피감사회사)
71.45	28	X1=2 (보고서 이용자)
95.73	81	X1=3 (감사인)
	155	Total

Corrected for Ties

Cases	Chi-Square	Significance	Chi-Square	Significance
155	30.1781	.0000	42.5438	.0000

Cross tabulation: X45
by X 1

		Count	Row Pct	X1— Col Pct	Tot Pct	1	2	3	Row Total
X45	1	20					19	32	71
		28.2				26.8	45.1	45.8	
		44.4				65.5	39.5		
		12.9				12.3	20.6		
	2							2	2
								100.0	1.3
								2.5	
								1.3	
	3	25					6	37	68
		36.8					8.8	54.4	43.9
		55.6				20.7	45.7		
		16.1				3.9	23.9		
4						4	10	14	
						28.6	71.4	9.0	
						13.8	12.3		
						2.6	6.5		
Column Total		45	29	81	155				
		29.0	18.7	52.3	100.0				

4) 정규감사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감사(예, 약식감사)의 도입 필요성

중소기업등에 적합한 수준으로서 미국의 review service 혹은 일본의 한정감사 내지 조사(안)과 유사한 약식감사제도의 신설필요성을 묻는 질문(변수 X4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즉 응답지 (1) 중소기업 등의 경우 감사비용부담이 감소되므로 도입이 필요하다.
 (2) 감사인의 법적책임이 감소되므로 도입이 필요하다.
 (3) 감사인의 책임과 보수가 함께 축소된다면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4) 기타(정규감사 이외의 새로운 감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

이 4항 중에서 group I (피감사회사)는 3항(55.6%)과 1항(44.4%)으로 약식감사의 도입필요성을 전적으로 인식하고 group II (보고서이용자)는 1항(65.5%)을 주된 이유로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group III (감사인)은 3항(45.7%)과 1항(39.5%)을 이유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만 기타 새로운 감사제도의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본 것은 보고서 이용자 중 13.8%와 감사인 중 12.3%에 불과하였다.

특히 세 응답 group 모두가 1항(중소기업용)에 큰 비중을 두고 약식감사제도의 신설이 필요함을 공통으로 느끼고 있었다(아래 Kruskal-Wallis test에서도 p 값이 0.1352로서 $\alpha=0.05$ 에서 유의성이 없어 약식감사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상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Kruskal-Wallis 1-Way ANOVA

X45
by X1

	Mean Rank	Cases		
	75.72	45	X1=1 (피감사회사)	
	66.31	29	X1=2 (보고서 이용자)	
	83.45	81	X1=3 (감사인)	
		155	Total	
				Corrected for Ties
Cases	Chi-Square	Significance	Chi-Square	Significance
155	3.2768	.1943	4.0022	.1352

5) 감사보수차별화의 가능성여부에 대한 견해

감사업무차별화의 구체적 뒷받침이 되는 것으로 감사보수차별화(변수 X44)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차이유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Kruskal-Wallis one-way ANOVA 검정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P 값이 0.54로서 $\alpha=0.05$ 에서 유의성이 없어 귀무가설(집단간 인식차이가 없다)을 채택함으로써 세 집단 모두 보수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Kruskal-Wallis 1-Way ANOVA

X44 by X 1				
	Mean Rank	Cases		
	75.17	43	X1=1 (피감사회사)	
	75.84	29	X1=2 (보고서 이용자)	
	68.51	71	X1=3 (감사인)	
		143	Total	
Corrected for Ties				
Cases	Chi-Square	Significance	Chi-Square	Significance
143	1.0071	.6044	1.2324	.5400

그러나 보수차별화의 방식면에서는 Contingency table에 의거하면 제 1 그룹(피감사회사)과 제 2 그룹(보고서 이용자)은 설문지 제 2 항 ‘감사업무의 성격과 법적책임의 경중에 따라 차별화 가능’을 주된 응답(각 46.5%, 69.0%)으로 선정한 데 비하여 제 3 그룹(감사인)은 설문지 제 1 항 ‘감사업무에 투입된 인원과 시간에 비례하여 차별화 가능’을 주된 응답으로(45.1%) 선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6) 감사업무차별화에 대한 현실적 장애요인에 대한 견해

우리나라 현실에서 감사업무를 다양하게 계층화하고자 할 때 장애가 되는 요인을 묻는 질문(변수 X47)에서 응답자의 답변을 Kruskal-Wallis one-way ANOVA 기법으로 검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p 값이 0.1485로서 $\alpha=0.05$ 에서 유의성이 없어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장애요인이 있음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Kruskal-Wallis 1-Way ANOVA

X47 by X 1				
	Mean Rank	Cases		
	71.17	45	X1=1 (피감사회사)	
	65.00	28	X1=2 (보고서 이용자)	
	79.13	74	X1=3 (감사인)	
		147	Total	
Corrected for Ties				
Cases	Chi-Square	Significance	Chi-Square	Significance
147	2.5237	.2831	3.8147	.1485

그리고 장애요인이 무엇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응답으로서는 세 집단 모두 제 2 항 ‘보고서 이용자의 감사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을 주된 이유(각각 55.6%, 64.3%, 79.7%)로 들고 있으며 그밖에 ‘피감사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책임전가 우려’(피감사회사 및 이용자그룹)와 ‘감사인의

수입감소우려'(감사인그룹)가 부차적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아래 contingency table 참조).

X1—	Count Row Pct Col Pct Tot Pct				Row Total
		1	2	3	
X47	1	11	7	4	22
		50.0	31.8	18.2	15.0
		24.4	25.0	5.4	
		7.5	4.8	2.7	
	2	25	18	59	102
		24.5	17.6	57.8	69.4
		55.6	64.3	79.7	
		17.0	12.2	40.1	
	3	4	1	9	14
		28.6	7.1	64.3	9.5
		8.9	3.6	12.2	
		2.7	.7	6.1	
	4	5	2	1	8
		62.5	25.0	12.5	5.4
		11.1	7.1	1.4	
3.4		1.4	.7		
5			1	1	
			100.0	.7	
			1.4		
			.7		
Column Total	45 30.6	28 19.0	74 50.3	147 100.0	

(Missing : 13)

(3) 조사대상집단내 특성간의 인식차이에 대한 가설의 test

각 대상그룹내에서도 특성별로 인식차이가 있는지를 법적책임에 대한 문항(설문지 Ⅲ-1 항, X 25 로 code 됨)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가) 피감사회사그룹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_0^3 : 피감사회감의 규모별로 감사인의 책임도 인식에 차이가 없다.

H_a^3 : 피감사회사의 규모별로 감사인의 책임도 인식에 차이가 있다.

여기서 규모는 외감법상 실시기준으로 되고 있는 자산총액(변수 X 5)을 이용하였으며 SPSS/PC+의 Means(Breakdown)를 이용 X25 by X1 and X6 로 분석하였다.

구 모	기 업 수	최 빈 수
(1) 70억 미만	14	3항
(2) 70억~1000억 미만	22	3
(3) 1000억 이상	9	3
전 체	45	

(missing : 2)

따라서 피감사회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제 3항 '적용한 감사절차의 범위에 따라 감사인의 법적 책임이 다르다'는 동일한 응답을 하여 책임도인식상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귀무가설 채택)²¹⁾

(나) 보고서 이용자 그룹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_0^4 : 보고서 이용자의 업종별로 감사인의 책임도인식에 차이가 없다.

H_a^4 : 보고서 이용자의 업종별로 감사인의 책임도인식에 차이가 있다.

여기서 업종은 이용자용 설문지 제 1항(변수 X3)에 기준을 두고 구분하였으며 SPSS/PC+ Means X25 by X1 and X3로 분석하였다.

업 종	회 사 수	최 빈 수
은 행	10	3항
증 권 회 사	7	3
투 자 신 탁 회 사	1	3
보 험 회 사	2	3
정 부 기 관	2	1
단 자 · 리 스	7	1
전 체	29	

(Missing : 1)

정부기관(진단보고서 이용자)과 단자, 리스사는 공인회계사의 기명날인이 있으면 모든 업무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책임이 있다(1항)고 보는데 비하여, 은행, 증권회사, 투자신탁, 보험회사는 적용한 감사절차의 범위에 따라 감사인의 책임차이가 있다(3항)고 보는 등 상이하였다.(귀무가설기각)

(다) 감사인그룹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_0^5 : 감사인의 조직형태별로 감사인의 책임도인식에 차이가 없다.

H_a^5 : 감사인의 조직형태별로 감사인의 책임도 인식에 차이가 있다.

21) 설문지의 응답이 名目尺度이므로 평균이(mean) 아닌 최빈수(mode)를 기준치로 이용함.

여기서 조직형태는 감사인용 설문지 제 2항(변수 X4)에 기준을 두고 구분하였으며 Means X25 by X1 and X4로 분석하였다.

조직 형태	회 계 사 수	회 빈 수
회 계 법 인	72	3항
합 동 사 무 소	6	3
개 인 감 사 반	4	3
전 체	82	

(Missing : 1)

감사인 그룹에서는 모두 3항 즉 '감사절차의 적용범위에 따라 법적 책임의 정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응답을 하여 조직형태별로는 인식의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귀무가설 채택).

IV. 結 論

1. 연구의 요약과 提言

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회계감사업무의 다양화 내지 수직적 차별화(vertical service differentiation)가 얼마나 필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 및 장애요인은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및 미국의 감사 및 피감사업계의 최근 동향을 살펴본 뒤 회계감사에 대한 문헌(제도 포함) 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본질적으로 회계감사는 기업을 둘러싼 제반 이해관계자들이 내, 외부자간 정보의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 상태하에서 복잡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장치로서 도입한 사회 제도인 바 이를 위한 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의 필요성은 오늘날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감사대상업체가 법령에 의한 강제감사 또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임의감사의 형태로 확대일로에 있게 되면서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감사의 비용과 효익의 比較思考, 적용감사절차의 조정가능성 문제등이 제기되어 감사업무에 대하여 감사인의 관련정도를 기준으로 한 수직적업무차별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요컨대 감사 paradigm의 쇄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분야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개관한 뒤 국내의 先學의 유사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특징사항으로 보고서 이용자는 물론 피감사회사와 감사인을 포함한 세 이해관계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현행 회계사 직무를 법령 및 실무에서 찾아 체계화 한 뒤 이에 신설 추가될 업무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인식도를 설문지 방법에 의거 전수조사 또는 객관적 표본추출기법을 사용하여 자료수집한 뒤 이를 통계적으로 가설검정하는 현장연구(field study)를 실시하였다. 이때 가설검정은 통계학적 단일변량분석기법과 다변량 분석기법을 모두 이용하여 행하였다 실증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회계사의 직무구분과 관련하여 監査와 鑑定의 차이는 대체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감정과 證明간의 구별 및 '정리'의 해석은 잘 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감사와 증명의 구분과 '기업진단'에 관한 해석 역시 이해관계자집단간에 인식이 같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업무계층별 감사인의 책임수준은 회계감사→회계감정→기업진단→세무대리→회계입안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나 부여된 신뢰도는 모두 '보통'과 '다소신뢰'(척도 4 중 2와 3에 각각 해당)의 범위안으로 한정적이었다.

(3) 이해관계자 집단간에 감사업무차별화에 관한 인식도를 判別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특히 단일변량분석(K-W-元分散分析法)으로 구체적 현안인 「어음발행으로 인한 簿外負債에 대한 감사」에 대한 필요절차를 조사 분석한 결과 세 그룹간 인식이 동일하지 않았다.

(5)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 연구과제인 독립된 약식감사(한정감사)제도의 도입필요성에 대하여는 세 그룹 모두 공통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만 그 동기에 있어서 피감사회사와 감사인그룹은 감사인 책임과 보수가 함께 축소되는 것을 들었으나 보고서이용자그룹은 중소기업 등의 감사비용부담경감을 택하였다.

(6) 또 감사보수차별화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위와 일관되게 세 그룹 모두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그 방안으로 감사인 그룹은 「투입된 인원과 시간에 비례한 차별화」를 택한데 비하여 피감사회사와 보고서 이용자그룹은 공히 「감사업무의 성격과 법적 책임의 경중에 따른 차별화」를 택하여 견해를 달리하고 있었다.

(7) 한편 감사업무차별화에 대한 현실적 장애요인에 관한 응답에서 세 그룹 모두 장애요인이 있다고 대답하면서 「보고서이용자의 감사업무에 대한 이해부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8)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집단 내 특성간에 감사인의 책임도 인식상 차이를 검정한 결과 피감사회사와 감사인 그룹은 각각 규모별, 조직형태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이용자 그룹에서는 업종별 차이를 보여 정부기간·단자·리스회사 등은 「공인회계사의 기명날인이 있으면 모두 동일한 책임이 있다」를 택한데 비하여 은행·증권·투자신탁·보험회사 등은 「적용한 감사절차의 범위에 따라 감사인의 책임이 다르다」를 선택하였다.

이상 연구의 결과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었다.

첫째, 이해관계자 그룹 모두가 회계감사업무는 체계적으로 차별화 가능하며(예컨대 정규감사—약식감사—기업진단—계산확인 등) 동시에 현실상 緊要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수引下나 감사대상축소 등 소극책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연구를 거쳐 국민경제에

소망스런 외부감사의 확장으로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때 새로운 제도로 도입되는 약식감사의 정의, 성격, 절차 및 보고 등 일련의 관련사항을 현행 상장기업에 국한하여 정규감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반기검토와 분리, 신설하고 이를 상대적으로 불비한 회계조직과 좁은 이해관계범위 등의 특색을 지니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용할 감사로서 확대적용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됨이 필요하다.

셋째, 업무차별화의 구체적 뒷받침으로 약식감사와 기업진단 등의 법적책임의 명확한 규정을 돕과 동시에 이에 따른 합리적 보수차별화도 기해야 할 것이며, 다만 현실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요인인 이들 하위계층보고서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적극적 계몽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현행 회계사 직무관련 규정인 ‘공인회계사법’과 ‘회계사보수규정’ 등은 시급히 정비내지 개정되어 용어에 관한 明文의 유권해석을 돕은 물론 오늘날의 變轉하는 회계사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약식감사의 보고서문안은 현행 반기검토의 의견표명거절문구외에 미국의 review service 경우처럼 적용절차 및 관련 책임에 대한 언급을 보고서 이용자들이 이해가능토록 구체화함이 바람직하며, 약식감사를 받던 중소기업이 일정한 자산총액 또는 부채총액(일본)을 초과한 경우 그 익년부터는 정규감사를 받도록 재조정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2. 본 연구의 한계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실증연구를 마친 뒤에 시간의 제약으로 또는 필자가 불민하여 미래의 연구과제로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가. 표본선정에 있어 보고서 이용자 그룹을 기관투자자만에 한정하고 개인투자자는 고려하지 않은 점과 선정된 표본 중 무응답자로 인한 오류(non-response bias)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나. 설문지에 의한 조사방법론상의 문제로서 설문의 방식, 응답자의 환경통제곤란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다. 측정의 신뢰성 검토에 있어서 응답의 신뢰성이 통상의 신뢰수준(Cronbach's alpha 기준)보다 낮게 나오므로써 신뢰성제고를 위한 2,3 차의 추가절차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약상 이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라. 설문내용의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특정문항에 대한 missing 이 다수발생함으로써 MDA 적용시 제Ⅱ절과 제Ⅲ절을 동시에 고려할 수 없었다.

마. 연구의도에서는 감사 및 회계업무(auditing and accounting services)의 최하위계층으로 ‘기장대리’를 고려하였으나 응답자들은 설문에서 회계사보수규정을 인용제시한 것을 의식, ‘세

무대리'로 혼동되는 답변을 하게 한 실수가 있었다.

※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와 측정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부분은 지면 사정으로 게재하지 못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필자에게 직접 문의 바람.

參 考 文 獻

1. 국내문헌

- 南相午·金星基, 外部監査制度에서 監査人の 獨立性과 責任에 관한 研究. 서울대 경영연구소(1987. 3)
대한민국정부, 감사인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재무부 告示)
_____, 공인회계사법, 법률 제3441호(1981)
_____,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3297호(1980)
박승현·신준용, “외부감사대상과 보고서활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 기업경영연구소, (1987.2)
李權洙, 上場會社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기초한 우리나라 외부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會計誌, 20호(한국공인회계사회, 1984) pp.79~96.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의 조직 및 운영규정(1985)
_____, 공인회계사보수규정(재무부장관승인) 1986. 7.
_____, 회칙(1986)

2. 외국문헌

- AAA, Auditing Concepts Committee, A Statement of Basic Auditing Concepts (ASOBAC), Studies in Accounting Research No. 6, 1972.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 Committee, Statement on Standards for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 (SSARS) No. 1-5. 1978-1982.
Accounting Principles Board, Opinion No.28, “Interim Financial Reporting,” AICPA, 1973.
Auditing Standards Board, Statements on Auditing Standards(SAS)-Codified by AICPA, 1987.
Chow, C.W. “The Demand for External Auditing: Size, Debt and Ownership Influences.” The Accounting Review(April 1982), pp.272-91.
Commission on Auditor's Responsibilities (CAR, Cohen Commission), Responsibilities (CAR, Cohen Commission), Report,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AICPA, 1978.
Financial Forecasts and Projections Task Force, Guide for a Review of a Financial Forecast (Forecast Guide), AICPA, 1980.
Francis, J.R. and D.J. Stokes. “Audit Prices, Product Differentiation, and Scale Economies:Further Evidence from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1986), pp. 383-93.
Francis, J.R. “The Effect of Audit Firm Size on Audit Prices: A Study of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August 1984), pp.133-51.
Hall, W.D. “How Much Auditing is enough? Critique,” The Accounting Establishment in Perspective (Arthur Young & Co.), pp.133-41.
Kell, W.G., W.C. Boynton, and R.E. Ziegler. “Modern Auditing,” 3rd ed. John Wiley & Sons, Inc., 1986, ch.17-18.
Kerlinger, F.N.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3rd ed.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6,

- pp.407-13.
- Mednick, R. and G.J. Previts. "The Scope of CPA Services: A View of the Future from the Perspective of a Century of Progress." *Journal of Accountancy* (May 1987), pp.220-38.
- Ng, D.S. "Supply and Demand for Auditing Services and the Nature of Regulation in Auditing. "The Accounting Establishment in Perspective (Arthur Young & Co.), pp.99-124.
- Nie, N., C. Hull, D. Bent, M. Niewonger,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New York, McGraw-Hill, 1975.
- Norusis, M.J. *SPSS/PC+*, SPSS Inc, 1986.
- Fany, K. and P.M.J. Reckers, "Non-Audit Services and Auditor Independence A Continunig Problem.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AAA)*, Spring 1984, pp.89-97.
- Shockley, R.A. and R.N. Holt. "A Behavioral Investigation of Supplier Differferntiation in the Market for Audit Servic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1983), pp.545-64.
- Shockley, R.A. "Perceptions of Auditor's Independence: An Empirical Analysis."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1981, pp.785-800.
- Simunic, D.A. "The Pricing of Audit Service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pring 1980), pp.161-90.
- Simunic, D.A. "Aduiting, Consulting, and Auditor Indepen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1984, pp.679-702.
- U.S. Senate, Committee on Governmental Operations, Subcommittee on Report, Accounting, and Management (Metcalf Committee), *The Accounting Establishment: A Staff Study*, 1977.
- 企業會計審議會特別部會, 小規模會社に對する 外部監査にかかる實態調査報告, 會計ジャーナル, 1985. 9.
- 法務省民事局, '商法・有限會社法 改正試案' 原文, 企業會計, 1986. 7.
- 日本公認會計士協會, '商法・有限會社法 改正試案' に對する意見, 1987. 1.
- 日本公認會計士協會, '各種 報酬規定, 1986. 5.
- 日本稅理士連合會, 稅理士業務報酬の 最高限度に關する基準, 1980. 8.
- 竹下昌三, 商法等改正試案の 調査案と 指導案, 日本會計學會, 會計, 第131卷 第3號, 1987.
- 森實, 中小會社監査に 對する一つのアプローチ 日本會計學會, 會計, 第132卷 第8號, 1987. 3.
- 百合野正博, 監査の本質と中小會社監査, 日本會計學會, 會計, 第132卷 第5號, 1987. 11.

